

2007년 6월 18일 포트루이스에서 서명

2008년 3월 7일 발효

##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(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)는,

두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,

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 영역에서의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고,

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가 이 분야에서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촉진할 것을 인식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# 제1조 정의

이 협정의 목적상,

1. "투자"라 함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,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동산·부동산 및 저당권·유치권·질권 등 그 밖의 물질적 재산권
- 나. 지분·주식·채권 및 그 밖의 형태의 회사나 기업에의 참여
- 다.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 상의 이행청구권
- 라. 산업소유권·저작권·특허권·실용실안특허·의장·상표·상표권·기술공정·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
- 마. 천연자원의 탐사·개간·추출 또는 ?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
- 바.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법령에 따라 임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의 처분 하에 있는 재화

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2. "수익"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, 특히 이윤·이자·자본이득·배당금·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3. "투자자"라 함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- 가. "자연인"이라 함은 각 계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.
- 나. "법인"이라 함은 회사·공공기관·재단·조합·상사·단체·기업 및 협회 등 각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.

4. "영역"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대한민국의 경우, 그 영역과 도서 및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·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

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 수역

나. 모리셔스의 경우,

- 1) 모리셔스의 법률에 따라 모리셔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 및 도서
- 2) 모리셔스의 영해
- 3) 해양·해상·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모리셔스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대륙붕을 포함한 지역으로 국제법과 모리셔스의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이후 지정될 모리셔스의 영해 이원의 모든 지역.

5. "자유태환성 통화"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.

##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

1.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·조성하며,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.

2.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투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 및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합의 및 기술적·상업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위한 계약을 부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3.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투자자의 수익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상 공정·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,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.

4.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·관리·유지·사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

## 제3조 투자의 대우

1.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·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,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.

2.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운영·관리·유지·사용·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.

3.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가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·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가. 전적으로 또는 주요하게 조세와 관련되는 국제협정 또는 약정

나. 관세동맹·경제동맹·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 및 유사한 국제협정의 현재 또는 미래의 가입 또는 참여

4. 이 협정의 규정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이 협정과 일관된 의무를 방해하지 않는다.

## 제4조 손실보상

1.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·국가비상사태·항거·반란·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, 복구·배상·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.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.

2.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, 이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복구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.

가.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징발

나.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

이에 따른 지불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.

## 제5조 수용

1.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하는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신속·충분·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국유화·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(이하 "수용"이라 한다)를 당하지 아니한다.

2.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,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,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. 수용 및 보상 모두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U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.

3.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4. 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 동 지분 또는 회사채의 소유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제2항에 명기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 적용된다.

## 제6조 투자 자산 및 수익의 송금

1.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.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가. 수익·자본이득·배당금·이자·사용료·수수료 및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경상소득

나.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·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

다.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

- 라.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 국민의 소득
- 마.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
- 바.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
- 사.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

2.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경상거래에 적용되는 시장환율 또는 송금일에 적용되는 공식 환율에 따라 결정된 시장환율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율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.

## 제7조 대위변제

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, 그 다른 쪽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.

- 가.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양도되는 것
- 나.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

대위되는 권리 또는 청구권은 원래의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## 제8조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

1.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투자 관련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. 그러한 분쟁을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닌 분쟁당사자는 그의 의향을 다른 쪽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
2. 투자가 행하여진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.

3.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분쟁은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다.

4. 투자자는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에 회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.

- 가. 분쟁당사자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
- 나. 사전에 합의된 적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
- 다. 이 조에 따른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절차

5. 이 조 제4항 나목 및 제4항 다목에 따라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.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한다.

## 제9조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

1.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.

2.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분쟁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.

3. 중재재판소는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. 각 계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.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며 양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을 선출한다.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.

4. 이 조 제 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,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그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. 부소장도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그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.

5.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. 그러한 결정은 양 계약당사자를 구속한다.

6.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. 재판장과 재판소 관련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.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결정으로 양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.

## **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**

1.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계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
2.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특정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.

3.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.

## **제11조 협정의 적용**

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이전 및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,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## **제12조 발효, 존속 및 종료**

1. 이 협정은 계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.

2.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, 그 이후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.

3. 이 협정의 종료 통지가 접수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 통지의 접수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.

4. 이 협정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07년 6월 18일 포트루이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모리셔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